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
■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7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배 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는 회의, ②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속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후단 삭제> 다만,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

③ · ④ (생략)	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최근 12·3 계엄 사태 등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사후적 검증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는 다음과 같음¹⁾.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 회의 종류²⁾>

회의 종류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장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이 때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위의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 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제1호),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제2호),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제3호),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제4호)와

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2) 특히, 이 중 (1) ~ (3), (5), (6)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제6호)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행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국가의 중요 사안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회의까지 모두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1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 현황

□ 28개 중앙행정기관 중 97개 회의 ('24. 9. 11. 기준)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24.9.11.
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05.3.19.
3	공정거래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09.7.14.
4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23조	'01.12.1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자격기본법 제8조	'24.9.11.
6		국가지식정보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24.9.11.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3.8.20., '18.12.28.
8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	'01.12.13., '18.12.28.
9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8.12.28.
10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법 제3조	'01.12.13., '18.12.28.
11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8.12.28.
1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	'24.9.11.
13	교육부 (4)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24.9.11.
14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인성교육진흥법 제9조	'18.12.28.
15		자격정책심의회	자격기본법 제8조	'18.12.28.
16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13.8.20., '14.12.26.
17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9.11.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1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05.3.19.
1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18.12.28.
20	국방부 (3)	정책회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국방부훈령 제2850호)	'09.7.14.
21		군무회의	군무회의규칙(국방부령 제793호)	'09.7.14.
2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13.8.20.
23	국토교통부 (5)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01.12.13.
24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前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11.6.30., '18.12.28.
25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8.12.28.
26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18.12.28.
27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	'18.12.28.
28	금융위원회 (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09.7.14.
29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09.7.14.
30	기획재정부 (2)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05.3.19.
31		시도경제협의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01.12.13.
32	농림축산식품부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09.7.14.
33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67호)	'09.7.14.
34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09.7.14.
35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09.7.14.
36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제4조	'09.7.14.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37	문화체육관광부 (5)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1.6.30., '16.7.26.
38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제9조	'24.9.11.
39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4.9.11.
40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2	'24.9.11.
4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	'11.6.30.
4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9.7.14.
4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법 제9조	'09.7.14.
44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대체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12.18.
45	보건복지부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09.7.14.
4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09.7.14.
47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09.7.14.
48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0조	'13.8.20.
49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	'09.7.14.
50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 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3.8.20.
51	산업통상자원부 (8)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13.8.20.
52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24.9.11.
53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09.7.14.
54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13.8.20.
55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1.6.30.
56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4.9.11.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57		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01.12.13.
58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4조	'01.12.13.
59	여성가족부 (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13.8.20.
60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05.3.19., '16.7.26.
61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제36조	'09.7.14.
62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0조	'18.12.28.
6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3.8.20.
64	인사혁신처 (3)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제79조	'13.8.20.
65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舊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 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	'13.8.20., '19.12.30.
66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舊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13.8.20., '19.12.30.
67	중소벤처기업부 (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24.9.11.
68		상생조정위원회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4.9.11.
69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24.9.11.
70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통계법 제5조2	'18.12.28.
71	통일부 (2)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09.7.14.
7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13.8.20.
73	해양경찰청	장비선정심의위원회 (舊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3.8.20., '16.7.26., '23.5.9.
74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09.7.14., '14.12.26.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75	행정안전부 (23)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3.8.20., '18.12.28.
76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8.12.28.
77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3.8.20., '18.12.28.
78		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13.8.20., '18.12.28.
79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	'13.8.20., '18.12.28.
80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3.8.20., '18.12.28.
81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3.8.20., '18.12.28.
82		섬발전심의위원회 (舊도서개발심의위원회)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	'13.8.20., '18.12.28., '23.5.9.
83		서해5도 지원위원회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7조	'13.8.20., '18.12.28.
84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9조	'13.8.20., '18.12.28.
85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18.12.28.
86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4.9.11.
87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조	'13.8.20., '18.12.28.
88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12.28.
89		정보공개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13.8.20., '18.12.28.
9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 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8.12.28.
91		중앙주소정보위원회 (舊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9조	'13.8.20., '18.12.28., '23.5.9.

순번	소관기관	대상회의	설치근거	고시일
92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제6조	'13.8.20., '18.12.28.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	'13.8.20., '18.12.28.
94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66조	'13.8.20., '18.12.28.
95		지방재정관리위원회 (舊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18.12.28. '24.9.11.
9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18.12.28.
97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09.7.14., '18.12.28.